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핵심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03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8
1.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요	8
2. 에너지·자원 투자 승인 관련 해외사례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8.
3. 회부연월일 : 2024.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임.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내에 있는 핵심 자원에 대해서도 공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가령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 영일만 앞 ‘대왕고래’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혀, 핵심자원인 석유 및 가스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핵심 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3조 제목 및 제3항부터 제5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국내 핵심자원에 대해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투자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①·② (생략)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국내 핵심자원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④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의 투자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신설>	⑤ 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작성 방법 및 상임위원회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¹⁾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확보가 중요함.

최근 동해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에서 7개의 유망구조가 도출되어 탐사시추를 준비중인데, 탐사시추 결과에 따라 추가로 4차례의 시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는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해외투자를 유치할 계획임²⁾.

그런데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가스 등 핵심자원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공공급기관(공공기관 등)³⁾이 관리하는 국내 핵심자원에 대해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투자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1) 2022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4.4%임(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에너지통계연보).

2)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요 참고자료 1 참조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공급기관”이란 핵심자원을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7. “공공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록 하고 외국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자원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핵심자원이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핵심자원의 수급위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민간기업의 투자계획서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입법례가 없는 점과 외국인투자 시 투자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국내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⁴⁾는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투자는 국가안전, 공공질서유지, 보건위생, 환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전 등의 사유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과 제한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5조⁵⁾ 및 제6조⁶⁾는 외국인투자 시 산업통상자원부장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에 대한 신고 및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 승인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내기업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국제규범의 일반원칙인 내국민대우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핵심광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여 “핵심자원”⁷⁾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핵심광물”⁸⁾은 석유, 천연가스 등을 제외한 광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문위치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핵심자원은 주로 석유 및 가스를 의미함.

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다. 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소재·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부품

문 의 처
02)6788-5457

※ 참고자료

1.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요

- (연혁) 정부는 동해가스전 개발·생산('04~'21) 이후 동해 탐사 계속 중
 - ('24년 정부예산)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481억원 중 60억원 (8/6-1북부)
 - ※ '24년 정부 출자금 60억원 + 한국석유공사 자체자금 60억원으로 120억원 규모
- (부존 유망성 분석) 既측적된 동해 심해 탐사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대왕고래'등 7개 후보지점 도출(미국 ACT-GEO社, '23.2월~12월)
 - 석유·가스 탐사자원량 총 35억~140억 배럴 부존 가능성
 - 매장 예상 자원 구성은 천연가스 75%, 초경질원유 25% 추정
- (정부계획) 세부 시추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외부 투자유치 추진
 - (시추계획) '24.12월 의무 시추 계획, 순차적으로 4차례 추가 시추 추진
 - (제도개선) 조광권 재설정, 조광료율 조정 등 조광제도 정비 추진
 - (시추 재원조달) 정부 재정지원, 한국석유공사 자체 자금, 국내·외 투자유치 등
 - ※ 1공 시추 시 1천억원 내외 소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에너지·자원 투자 승인 관련 해외사례

☐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감독

국가	내용	근거 법령
미국	· 육상 자원(Oil&Gas)은 지주의 소유물로 관리·감독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 · 해상 자원(Oil&Gas)은 법령에 의해 관리·감독 권한이 <u>중앙 및 지방정부에 위임됨</u>	· 43 U.S. Code Chapter 29, Subchapter III
영국	· 자원(Oil&Gas)에 관한 모든 권한은 <u>행정부(North Sea Transition Authority)에 위임됨</u>	· Petroleum Act 1998
중동	· UAE의 경우 Supreme Petroleum Council 이라는 <u>국왕 직할 기구에서 관리·감독 총괄</u> ·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Supreme Council for Aramco라는 <u>왕세자 직할 기구에서 관리·감독 총괄</u>	

☐ 국회 승인

국가	내용
튀니지	· 과거 석유 자원 투자는 정부 승인 사항이었으나, 재스민 혁명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u>국회 승인 사항으로 변경</u>
베네수엘라	· 모든 석유 산업은 국가가 독점하나, 예외적으로 <u>국회 승인이 있을 경우 해외 기업 투자 허용</u>

자료: 산업통상자원부